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까지 증명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등록신청자료의”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로,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에는 그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다만,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등록신청자료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는 증명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 제11조제1항제9호: 재활용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6. ~ 11. (생략) ② ~ ④ (생략)</p>	<p><u>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u> <u>를 통하여 등록신청자료 생략</u> <u>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u> <u>등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u> <u>경우는 증명자료 제출을</u> <u>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	--